

#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제안이유

- 묘지사용허가의 취소 중 “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”를 “군수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”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묘지사용권의승계 중 “ 승계권자 증명서류 제출의 무규정” 를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 하고자함.

## 주요골자

- 군수가 묘지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(안제4호1항제4호)
- 묘지사용 승계를 받고자 하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를 폐지(안제6조)

##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관계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.

평창군조례 호

##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중 “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” 를 “군수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4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군수가 <u>공익상</u>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</p>	<p>제4조(사용허가의 취소)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군수가 <u>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 사업등을 위하여</u>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</p>
<p>제6조(묘지사용권의 승계) ①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.</p> <p>②<u>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묘지사용권의 승계) ----- ----- -----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